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1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한병도·신영대·조 국

이해식 · 장철민 · 임오경

전진숙 • 진선미 • 윤준병

강유정ㆍ이원택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.

그러나 가족의 장애는 그 요건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족에게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근로자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.

이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족의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, 제22조의3).

#### 법률 제 호

#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"노령으로"를 "노령, 장애로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본문 중 "노령"을 "노령, 장애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"또는 부"를 각각 "또는 부,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부모"로 한다.

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"노령으로"를 "노령, 장애로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	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
등을 위한 지원) ① 사업주는	등을 위한 지원) ①
근로자가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	
배우자의 부모, 자녀 또는 손자	
녀(이하 "가족"이라 한다)의 질	
병, 사고, <u>노령으로</u> 인하여 그	<u>노령, 장애로</u>
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(이하	
"가족돌봄휴직"이라 한다)을 신	
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	
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	
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	
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	
는 경우,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	
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	
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	
지 아니하다.	
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(조	②
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	
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	
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
의 질병, 사고, <u>노령</u> 또는 자녀	<u>노령, 장애</u>

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(이하 "가족돌봄휴가"라 한다) 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 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 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- ③ (생 략)
-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(생략)
- 2.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[제3호에 따라 가족 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(「한부모가족지원 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) 이내]로 하며,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. 다만,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<b>4</b>
1. (현행과 같음)
2
<u>또는</u>
부,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
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
의 부모

3.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 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가 발령되거나,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 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 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 일)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을 것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 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~ ⑩ (생 략) 제22조의3(가족돌봄 등을 위한 제22조의3(가족돌봄 등을 위한

		rr L	н
		<u>또는</u>	一
「장애아동	복지지	]원법_	제2
조제1호에	따르	장애아	돚의
			0 - 1
<u> 부모</u>			
÷ (=1	ചി)	d () (	•
5) ~ 10 (현	앵가 1	(급금)	

근로시간 단축) ①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) ① ------

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 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 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
 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
  돌보기 위한 경우
- 2. ~ 4. (생 략)
- ② ~ ⑦ (생 략)

1
<u>노령, 장애로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현행과 같음)